



2021 - 608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1호(2021.07.29.)로 고시된 “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”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4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정 사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1호(2021.07.29.)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내용 중 결정도에 단순착오로 작성된 일부 오기사항(차량출입불허구간) 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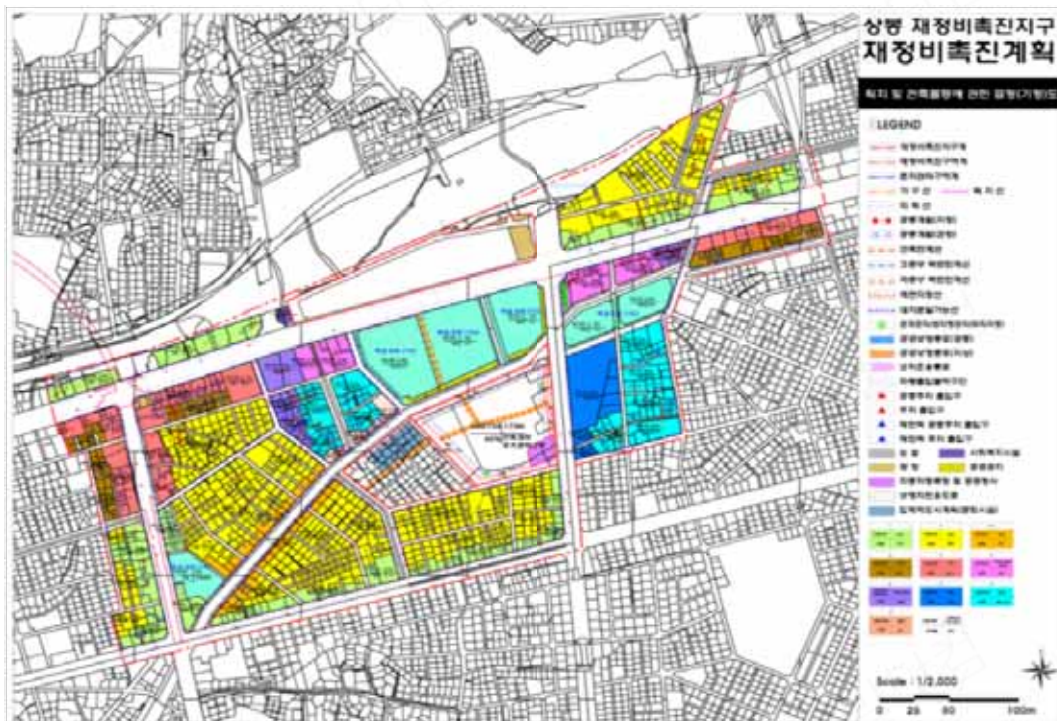
※ 이 외에 정정사항은 없음

2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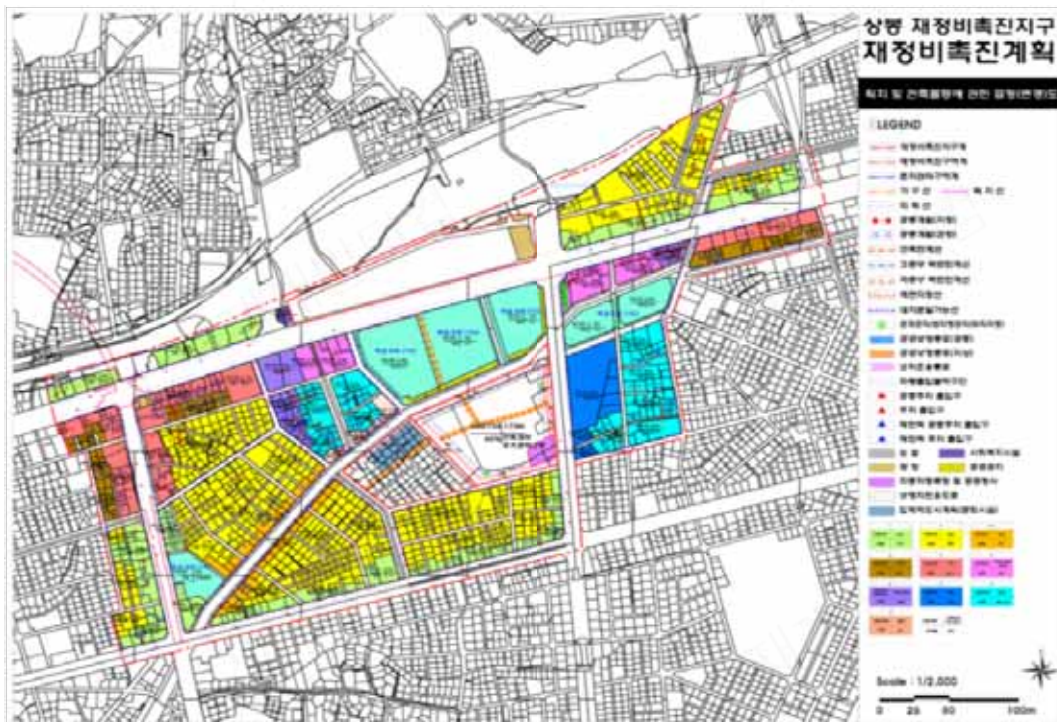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(☎02-2133-7228) 및 중랑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094-2193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- 이하 여백 -



○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정정 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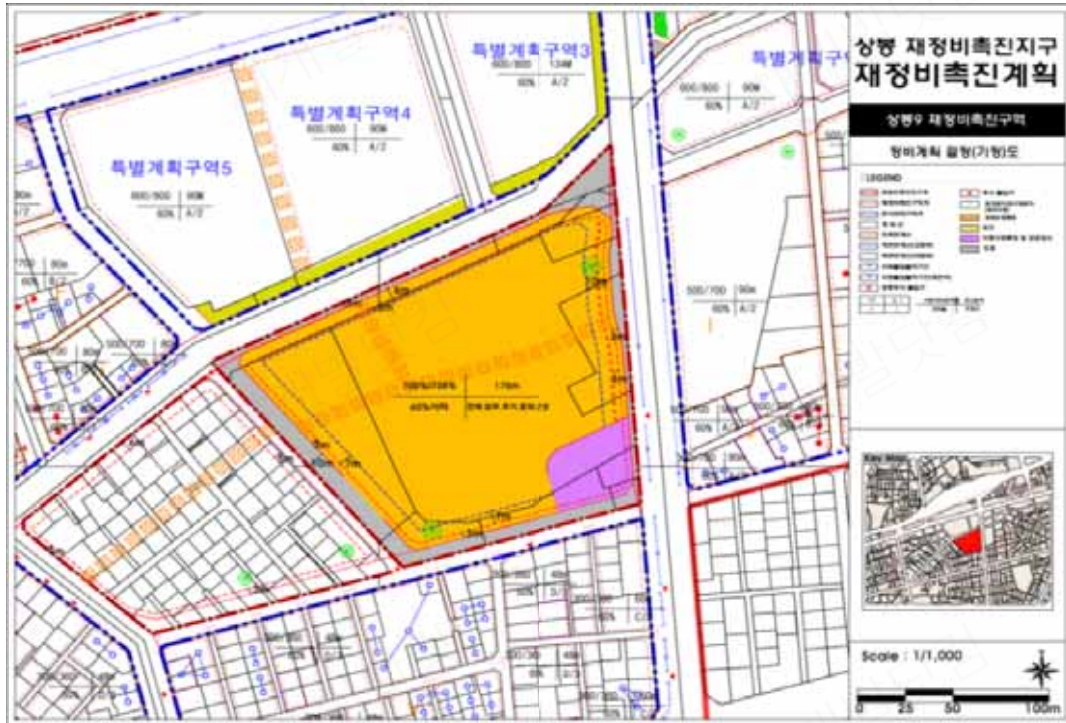
○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정정 전)



○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정정 후)



○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(정정 전)



○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(정정 후)

